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필리핀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Mr. Neil P. Catajay 국장 필리핀표준국 무역산업부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율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번호는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전기 도로 차량(ICS 코드: 43.120)
5. 제목(페이지 수, 언어, 열람방법): 경형 전기차 및 경형 전기차용 배터리의 의무 제품인증을 위한 기술규정(34페이지, 영어)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6/TBT/PHL/26_05451_00_e.pdf Mr. Neil P. Catajay 국장 필리핀표준국 무역산업부 이메일: BPS@dti.gov.ph
6. 내용: 이 부령(DAO)은 필리핀 내 수입, 제조, 유통 또는 판매 목적의 지정 경형 전기차(LEV) 및 경형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의무 제품인증 요건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는 전기안전에 관한 적용 가능한 필리핀 국가표준(PNS) 준수를 보장하고, 해당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감전, 전기적 오작동, 과열, 열 문제, 화재 및 기타 전기안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및 공공을 보호하고 있다. 이 기술규정은 또한 적절한 의무 제품인증 요건의 이행을 통해 필리핀 내 전기 모빌리티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

8. 관련 문서:

- 공화국법 제11697호 "전기차 산업 발전법(EVIDA)"
- 1987년 행정명령(EO) 제292호 "1987년 행정법전"
- 공화국법 제4109호 "표준법률"
- 공화국법 제7394호 "필리핀 소비자법"

9. 채택 예정일: 추후결정

시행 예정일: 추후결정

10. 의견 제출:

의견 마감일: 2026-12-13

[] 통보일로부터 **60일**

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

Mr. Neil P. Catajay

국장

필리핀표준국

무역산업부

3F Trade and Industry Building

361 Sen. Gil Puyat Avenue

Makati City

Philippines

1200

전화: (632) 751 4700; (632) 7913128

이메일: bps@dti.gov.ph

웹사이트: <http://www.bps.dti.gov.ph>